

가산세 강화 · 전문직 사업용 계좌 의무화 · 소득공제 확대 등

공평 과세를 위한 종합처방전 내린다!

- 공평과세를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 방안 주요 내용 -

(한국조세연구원, 2006. 7.)




<목 차>

1. 현금거래의 노출 강화
2.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활용범위 확대
3. 근거과세 확대
4.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과약 강화
5.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6. 부가가치세 거래흐름의 정상화
7. 세무조사의 투명화
8. 영세·성실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 7월 27일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소득과약 제고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동 방안에는 탈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온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강화를 목표로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세(Self-Billing) 제도 등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으며, 악의적인 탈세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고 70%의 가산세율 부과 등 다양한 세원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8월 중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

대 상	사업·부동산임대소득		근로·연금·이자·배당·일시·기타·퇴직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지급자가 사업자·비사업자 • 본인신고에 주로 의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지급자가 사업자 • 원천징수 가능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거래의 노출 • 근거과세 확대 • 부가가치세 흐름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과약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자료 수집 인프라 구축 						
과약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등 현금대체 결제수단 확대 • 금융거래 정보 활용 • 사업용 계좌 도입 • 장부기장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료 등 과세자료 확보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조서 제출범위 확대 • 세정을 통한 지도 강화 						
(+)									
보조수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border-right: 1px dashed black;">제 도</td> <td>• 가산세 강화 • 납세실적과 신용평가 연계</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dashed black;">행 정</td> <td>• 세무조사를 성실신고 유도목적의 조사로 전환 • 세무행정 과학화 • 자료상 감시체계 강화</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dashed black;">문 화</td> <td>•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td> </tr> </table>			제 도	• 가산세 강화 • 납세실적과 신용평가 연계	행 정	• 세무조사를 성실신고 유도목적의 조사로 전환 • 세무행정 과학화 • 자료상 감시체계 강화	문 화	•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제 도	• 가산세 강화 • 납세실적과 신용평가 연계								
행 정	• 세무조사를 성실신고 유도목적의 조사로 전환 • 세무행정 과학화 • 자료상 감시체계 강화								
문 화	•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									
병행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성실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 성실납세제도 도입 •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제도 강화 								

① 현금거래의 노출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직불카드 사용수준이 외국의 사용수준에 비해 크게 낮고,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대체가능성도 높지 않으므로 소액 현금거래를 직불카드 결제로 전환하여 과표양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현금영수증 제도의 조기 정착에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비율(69%)은 아직 높지 않은 수준이며, 집단상가 및 전문직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비율은 전체 사업자 평균 가맹비율에 비해 저조한 수준임.

* 전체 현금영수증 가맹비율: 69%, 변호사: 65%, 법무사: 54%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거부에 대한 세무조사·벌칙 등 제재규정의 실효성 미약

2. 정책 대안

구 분	주 요 내 용
1)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보다 상향조정(예: 20%)
2) 무기명 선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부여	○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영업자의 세원노출에 기여하므로 기명식 선불카드와 같은 소득공제 혜택 부여 - 실사용자의 최초 사용 전 인적 내역에 대한 인증절차 필요
3)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일정 규모(예: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소비자 대상업종 사업자에 대한 가맹의무화 추진 단,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의무 강제화는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검토 - 가맹점 미가입시 각종 감면배제, 가산세(수입금액의 0.5%),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등 제재방안 강구
4)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 발급 거부시 가산세 부과(발급거부금액의 5%) - 상습 거부시 감면 배제,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등 불이익 부과 * 상습 거부 연 5회 이상 발급거부 또는 거부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발급거부시 세무조사 및 벌금 부과 규정 신설
5) 발급 거부 등에 대한 신고유인 강화	○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 도입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인증받아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도 도입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6)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기준금액의 하향조정	○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금액기준의 단계적 하향 조정 검토 (예: 5천원 이상 → 3천원 이상)

②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활용범위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원화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수집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과세당국은 ‘조세범칙사건’ 조사시에만 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일반 세무조사의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요청이 곤란함.
- 국세청의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는 상속·증여세 조사, 부동산 투기조사,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 재산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확인이 필요한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여 유효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제약 요소로 작용
- 사업자의 소득 파악을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실물거래가 수반되는 거래증빙과 제한된 금융자료에 의존하여 개인거래와의 구분측면에서 한계를 지님.

2. 정책 대안

구 분	주 요 내 용
1) 혐의거래·고액현금거래에 대한 자료제공 범위 확대	○ 조세범칙사건에 준하는 일반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FIU를 통한 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국세청 과세정보도 FIU에 제공하여 FIU의 심사기능을 제고
2) 세무조사시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범위 확대	○ 자료상 혐의자, 현금수입업종 등 중요 탈루유형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시 금융기관 본점에 일괄조회를 허용 - 조세포탈 및 자료상 혐의자, 현금수입업종 및 전문직 등 탈루혐의자, 기타 중요 탈루유형(예: 회계장부 조작,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등)
3) 사업용 계좌 (Business Account) 도입	적용 대상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부터 우선 적용 후 단계적으로 확대 - 개인 복식부기 의무자는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 제조업(3억원), 음식·숙박업(1.5억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75백만원)
	대상 ○ 금융거래를 통하여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 관

	거래	<p>련 거래</p> <p>- 인건비·임차료는 사업용 계좌 지출을 의무화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대금결제는 별도 명세 작성·보관</p> <p><거래유형></p> <p>자산매매(토지·건물 등), 임차료·인건비·공과금 등 각종 경비, 매입(원재료·상품·제품 등), 매출 등</p>
	제재 방안	<p>○ 사업용 계좌 미개설시 가산세(예: 거래액의 0.5%) 부과</p> <p>- 단, 금융거래 곤란으로 별도 명세 등 작성·보관시 예외 인정</p> <p>○ 사업용 계좌 미설치(계좌를 통하지 않은 거래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에 대한 각종 감면 배제</p> <p>○ 사업용 계좌(별도 명세 포함)를 통해 확인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p> <p>※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예: 1~2년) 시행 유예</p>
	신고 방법	<p>○ 사업용 계좌는 거래 기본단위인 사업장 단위로 개설·운영</p> <p>- 단일 계좌로 2개 이상의 사업장 사업용 계좌 사용 가능</p>
4)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시스템 등과 연계체계 구축	<p>○ 신용평가기관에 제출되는 소득·재산 관련 자료를 국세청 D/B와 연계하여 자영업자의 소득축소 신고 유인을 제거하는 한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정보(예금·대출·상환이력 등)를 국세청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p>	

③ 근거과세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개인사업자 중 추계사업자가 기장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경우가 많아 무기장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기장사업자 위주의 세무조사 관행 등으로 기장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개인사업자 중 장부기장 사업자 비율: 54%
-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으로 소액 거래의 적격증빙 구비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함.
- 매출액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이 실제소득금액과 괴리가 발생하는 한계를 지님.

2. 정책 대안

구 분	주 요 내 용
1) 기장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기장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현행 10%에서 20%로 하향 조정(100만원 한도 유지)
2) 추계과세제도 개선	○ 증빙이 불필요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를 확대 ○ 신고자료·표본분석 등을 통해 추계과세가 무조건 장부기장에 비해 유리하지 않도록 개선
3) 근거과세의 인프라 구축	○ 적격증빙 수취 기준금액 인하 - 현행 5만원에서 1만원으로 하향 조정 ○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대상 확대 - 현행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영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 적용
4) 소비지출액에 의한 소득 추계방법 도입	○ 소비지출액을 파악한 후 원천이 밝혀진 소득 외에는 모두 소득금액으로 보아 추계 과세 - 지출액에 대한 각종 소득측정기준(개별 재산 취득·보유, 지출항목 등)의 객관화 및 납세자의 사전 소명절차 등 관련 절차 마련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단계적 도입 (예: 5억원 이상 고액누락자 등)
5) 유관기관과의 소득과약 공유체계 강화	○ 국세청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기관 및 기초생활보장 운영기관(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유 기반을 국세청 중심으로 구축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기준과 사회보험료 징수기준의 일원화로 사업주의 행정부담 경감

④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과약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일부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현금결제 비중이 높아 소득과약이 미흡할 뿐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간의 소득과약 방법의 차이 등으로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됨.

* 회계사·법무사 등: 협회에 의한 과세자료제출법, 변호사: 수입액이 아닌 수입사건 경유 수만 제출

2. 정책 대안

구 분	주 요 내 용
1)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	○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에서 제

식부기의무 부여	<p>외하여 복식부기의무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 불이행시 무신고에 준하는 가산세 부과 ○ 복식부기의무 부여시 모든 전문직 사업자에게는 자동적으로 사업용 계좌 개설의무도 부여
2) 전문직 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화 및 고객 요구시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 비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2,400만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의무화
3) 부가가치세법상 수입금액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전문직 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기재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5%) 부과 -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의사(면세사업자 및 소액거래건수 다수), 감정평가사(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과표양성화 수준이 높음), 법무사(수임사건 건수 및 보수 제출 의무자) 등은 제출의무 면제
4)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세무조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신고내역 정밀 분석 및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한 조사비율 강화 ○ 전관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집중관리

⑤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1. 현황 및 문제점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세목별 가산세율에 차이가 있어 일관성 및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악의적인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율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엄격한 가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법인세·소득세는 고의성 유무 등 신고누락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은 차등없이 일률적인 가산세율이 적용됨.
- 탈루세액이 5억원 미만인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시민에 의한 탈세 감시 풍토의 효과가 저감됨.

2. 정책 대안

구 분	주 요 내 용
1) 공통 가산세 제도의 도입	○ 무신고·무납부 등 모든 세목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를 통일적으로 적용

2) 악의적 의무위반과 단순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차등 적용	○ 부당과소신고 등 악의적 의무위반의 경우 단순 무신고에 비해 높은 신고불성실가산세율(40~70%)을 적용하여 성실신고를 유도 - 악의적 의무위반 여부의 판단은 납세자가 조세를 탈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세금을 무신고 또는 축소신고했는지를 기준으로 함.
3)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제도 확대	○ 포상금 지급대상 탈세제보 기준(현행 탈세액 5억원 이상)을 하향 조정하고, 포상금 지급한도액(현행 1억원)도 상향 조정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포상금(10만원) 확대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⑥ 부가가치세 거래흐름의 정상화

1. 현황 및 문제점

-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흐름이 단절되어 과표양성화에 애로가 발생함.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중심으로 한 현행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간의 부가가치세 거래의 상호대사체계(cross-checking)는 매출액을 비롯한 과세자료 수집에 한계를 지님.
- 간이과세제도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의무 면제 규정을 통해 근거 과세가 저해되고 거래 상대방으로 세금탈루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함.
- 사업자 단위의 부가가치세 과세체제로 인해 납세협력비용 증대 및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제 기준과의 상이 등 문제점 노출

2. 정책 대안

구 분	주 요 내 용	
1)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Self-Billing) 제도 도입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입자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확인을 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제외하되, 음식점업 등 영수증 교부사업자는 매입자의 요구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적용대상 매입자에 포함.	
2)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의 개선	일반과세자 ↓ 면세사업자	○ 상호대사를 위해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부과 -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도 매입세금계산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 ↓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대상업종의 확대 - 거래증빙의 흐름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중간단계에 개입 가능한 업종의 간이과세 배제기준 강화 : 부동산임대업·건설업 등은 중장기적으로 적용 배제 (화물차 등에 대한 세원관리강화)
3)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		○ 중·장기적으로 모든 거래내역이 자동 노출될 수 있는 전자계산서시스템 도입 - 성실납세제도 정착과 함께 ERP·전자장부시스템, 현금영수증 시스템 등과 연계
4) 부가가치세 가산세 강화		○ 고의적인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가산세 증과 (공급가액의 1% → 2%) -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타인명의로의 세금계산서 교부 등
5) 자료상 근절을 위한 관리 강화		○ 자료상 처벌 형량 강화(징역 2년 → 3년)를 통한 긴급체포 가능 -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작성 및 계산서 관련 자료상의 처벌 규정 신설 ○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허위 가산세 부과(예: 1%) ○ 자료상 자료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공급가액의 1% → 2%) - 자료상 수입 세무대리인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강화
6) 간이과세제도의 개선		○ 사업자별 간이과세 판단 및 적용배제업종의 확대 - 현재의 사업장별 기준이 아닌 모든 사업장 매출을 합산한 사업자별로 간이과세 여부를 판정 - 자동차소매, 단란주점, 호텔숙박업 등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
7) 사업자 단위 과세체제로의 전환		○ 사업자 단위 과세체제로의 단계적 전환 - 현행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를 확대하여 ERP 설치 기업의 경우 신고·납부 외에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및 납세관리인의 설정 등 모든 납세협력의무를 사업자 단위로 이루어지도록 함. - 중·장기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본점에서 신고·납부 개인사업자는 주사업장에서 신고·납부

⑦ 세무조사의 투명화

1. 현황 및 문제점

□ 전산성실도분석(CAF)를 활용한 현재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스템은 현실 거래형태의

다양성 등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에 미흡함.

* CAF(Compliance Analysis Function):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국세청 전산 성실도 분석 시스템

- 세무조사가 법령이 아닌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운용되어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에 미약함.

2. 정책 대안

구 분	주 요 내 용
1) 세무조사기법의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세규모·고의성 정도 등에 따른 조사 방식·기간·강도의 다양화 - 조사사례·기법의 DB화, 전산성실도 분석 시스템(CAF)의 보완·발전 -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 Aggressive Tax Planning)의 적극적 차단
2) 세무조사 관련 규정의 법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조사 선정절차, 조사대상자 선정방법을 국세기본법 등에 법제화 ○ 중·장기적으로 세무공무원 등에 대한 압력 행사 및 청탁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조세범처벌법에 신설

⑧ 영세·성실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POS·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로 종료됨.
- 영세사업자를 위한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성실신고 과세특례제도의 경우 적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감면세액 계산방법 등이 복잡함.

2. 정책 대안

구 분	주 요 내 용
1)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제도의 시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2006년 12월)을 2년간 연장 - 적용대상에 RFID(전자태그)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 추가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상품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제품에 부착하여 입·출고 및 유통단계를 관리하는 장치
2)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제의 단순화 및 확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대비 1.2배 초과 수입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전액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서 공제 - 수입금액 기준(자기조정 이하), 기장신고, 신용카드 가맹, 사업용 계좌 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전년 대비 1.2배 초과 증가한

	<p>사업자를 대상을 함.</p> <p>* 도·소매업: 6억원 미만, 음식·숙박업: 3억원 미만, 서비스업: 1.5억원 미만</p> <p>○ 성실사업자 과세특례 관련 국세청 고시사항의 최소화 및 적용요건, 감면세액 계산방법의 단순화</p>
3) 성실납세제도의 도입	<p>○ 비전문가인 사업자 스스로 기장 및 세금계산이 가능한 성실납세제도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식부기 및 근거과세 원칙에 입각하되, 복잡한 각종 경비 등 소득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 - 활용도가 낮은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15~25%) 적용 - 증빙에 의한 세금탈루 등이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경정배제